

## 福祉施設의 擴充과 效率的 運用

金 澄 玉

(濟州大 農化學科)

### I

大學의 本質은 真理探究를 통하여 國家·社會發展에 공헌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진리탐구는 한 사람, 한 시대에 이루될 수는 없고, 大學人인 教授와 學生들이 真理에 대한 치열한 情熱과 協同的 노력의 傾注하는 과정에서 이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은 學問的 協同體와 할 수 있다.

學問的 協同體인 대학이 그 본래의 機能인 研究, 教育 그리고 社會奉仕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자면 授業施設이나 研究施設은 물론이고 대학인들이 人間的인 交互通作用을 원활하게 하는 福祉施設도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福祉施設이라 함은 대학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支援施設로서 學問的 협동생활과 학생들의 인격 형성에 便宜을 제공하는 生活施設·文化施設 등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認識에서 볼 때 大學의 福祉施設은 授業施設이나 研究施設과 함께 必須施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는 대학이 전통적으로 존재하는 知識과 그것을 익득하려는 人類의 욕구를 상호 연결시켜 주는 場所라는 소박한 認識下에 授業施設과 研究施設을 중심으로 大學施設을 擴充하는 데 급급

해 온 것마저 든다. 물론 이러한 방향으로 大學施設을 頗重하게 한 배에는 우리 대학의 빈약한 살림살이에도 그 原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동안 급속하게 증가해 온 大學人口에 비하여 文教當局이나 私學財團의 살림살이가 授業施設이나 研究施設마저 충분히 마련할 정도로 향상되지 못해 왔던 점을 看過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대학이 國家發展과 社會變化를 위한 動因(change agent)으로서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 점차 多元的 性格을 지닌 대학(multiversity)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학 共同組織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인의 學內生活機能이나 文化機能 등이 중요한 대학 기능의 分化라는 관점에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大學人口의 급속한 증가와 社會樣相의 变遷에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들 機能의 發顯을 위해 대학의 福祉施設인 生活施設과 文化施設은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함께 확충되도록 의도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大學敎育의 大形化에 수반되어 일어나고 있는, 敎育條件과 敎育效果에 관한 現實的 문제들의 해결이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근간 우리 大學街에서 전통을 겪고 있는 學生指導機能의 바람직한 수행도. 이러한 生活機能이나 文化機能 등의 潛在的 기능을 顯在的 기능으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점진적이 될지는 모르나 균원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授業施設과 研究施設에 치중한 결과로서 야기된 知識偏重教育이니 人間性喪失이니 하는 大學街의 反省과 사회로부터의 비판도 이들 福祉施設이 확충되어, 그것을 활용하는 대학인이 보다 더한 보람과 즐거움을 大學生活에서 찾고 나아가서 바람직한 大學文化를 창조해 나갈 때 궁극적으로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 II

대학의 복지시설은 教授福祉施設과 學生福祉施設로 나눌 수 있을 것이나, 教授福祉施設에는 行政事務要員의 福祉施設도 포함시켜 教職員福祉施設로 그 범위가 확대·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시설에는 野外施設·通學便宜施設은 물론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의료보험과 같은 厚生制度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研究施設, 授業施設, 大學運營施設 등의 시설에서도 福祉施設의 要素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教授福祉施設은 우리나라의 大學設置基準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는 大學設置基準令이 기본적인 필수시설만을 大學施設로서 한정시키고 있는 테에基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國內 여러 대학에 教授會館이 건립되어 있고, 대부분의 대학에 教授休憩室이 있으며, 몇몇 대학에는 교수아파트도 설치되어 있다(表 1 참조).

〈表 1〉 國立大學校의 교수아파트 設置現況  
(1983년 현재)

校 名	規 模	校 名	規 模
서울大學校	6,504 m <sup>2</sup>	全南大學校	3,080m <sup>2</sup>
江原大學校	974	慶北大學校	1,085
忠北大學校	974	慶尙大學校	—
忠南大學校	1,079	釜山大學校	1,096
全北大學校	577	濟州大學校	4,952

이들 教授福祉施設 가운데 앞으로 특히 확충해 나가야 할施設은 교수아파트가 아닌가 생각된다. '74년 이후 서울소재 大學의 定員凍結, 그에 따른 地方大學과 地方캠퍼스(서울소재 대학

의), 定員擴大, 그리고 최근의 卒業定員制 실시로 地方大學이나 地方캠퍼스의 大學人口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이들 대학의 인근에는 大學村이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며 交通·通信網 등의 시설도 충분하지 않아 教授陣의 확보가 어려움은 물론이고 教授의 원거리 出·退勤에 따른 막대한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의 教授아파트의 設立은 교수들의 生活便宜를 제공한다는 점보다는 대학 본연의 機能과 學生指導의 機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진요한 課題라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濟州大學校의 경우 外國人客員教授, 招聘教授, 國內交流 勤務教授, 無住宅教授들을 위하여 교수아파트를 활용함으로써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불리한 조건을 다소나마 극복하게 하고 있고 아울러 대학 기능의活性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은 하나의 참고가 될 것이다.

學生福祉施設은 大學設置基準令에 규정되어 있는 유일한 복지시설이다. 따라서 大學福祉施設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시설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大學設置基準令에 명시된 學生福祉施設은 校舍面積의 공통 算出基準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그 규모가 어떠해야 하는지 어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 學生福祉施設은 학생들의 정신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活力을 불어넣어 주는 課外活動의 중심 시설이며, 여가 선용과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訓練의 場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과 教職員의 접촉 기회를 확대시켜 바람직한 大學文化를 창조할 수 있는 施設이기 때문에 그 확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지고 있다.

學生福祉施設은 그 종류를 회일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나 대체로 學生會館, 保健診療所, 學生修練場, 寄宿舎, 體育施設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學生會館(表 2 참조)은 大學設置令에서 명시되어 온 필수시설로서 그 속에는 學生處의 후생과를 비롯하여 學生生活研究所·학도호국단 사무실·대학신문사·교육방송국·학생회의실·서어클실·북사실·휴게실·學生食堂·문방구점·서점·일용품점·다과점·이용원·양화점·양복

〈表 2〉 國立大學校의 學生會館 設置現況  
(1983년 현재)

校 名	確保率 (%)	校 名	確保率 (%)
서울大學校	76.0	全南大學校	65.4
江原大學校	35.1	慶北大學校	61.5
忠北大學校	45.3	慶尚大學校	89.6
忠南大學校	45.2	釜山大學校	31.3
全北大學校	33.7	濟州大學校	100.0

점·샤워시설·오락실·음악감상실·약국·우체국·은행 등이 설치되고 있다. 그 가운데 우체국·은행·서점·이용원·양화점·양복점·약국 등은 일반적으로 制度的 또는 技術的인 이유로 貸貸運營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課外活動을 지원하는 시설과 行政部署 및 研究所 이외의 시설로서 예컨대 식당·문방구점·복사실·일용품점·기념품점·다과점 등은 直營이 되기도 하고 貸貸運營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後者の 시설들은 교수휴게실과 함께 直營施設로 하여 消費組合을 통해 운영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 학생도 함께 참여케 하여 大學 自律化를 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계획되는 것이 소망스럽지 않을까 생각된다.

保健診療所는 학생들의 건강 관리와 전염병 예방 등 공중 보건적 차원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學生福祉施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保健診療所에는 의사·간호원 등의 의료진을 두어 환자 진료 및 건강 상담은 물론이고 學生保健法 및 學生身體検査規程에 의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身體検査業務를 수행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학생 醫療共濟制度를 수립해서 학생들이 수업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진료받을 때 적절한 醫療費를 지급함으로써 大學生活의 안정과 保健向上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학의 保健診療所는 대학의 常設機構로서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더욱 필요한 것은 이의 常設화라 할 수 있겠다.

學生修練場도 대학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必須施設로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시설은 학생들의 단체수련·심신단련·야외학습·여가선용 등을 통하여 캠퍼스의 교과학습에 얹매여서 움츠러들기 쉬운 心身을 풀게 하고, 大自然과 접하는 환경 속에서 浩然之氣를 기르게 함으로써 미래사회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진취적

〈表 3〉 國立大學校의 學生寄宿舍 設置現況  
(1983년 현재)

校 名	確保率 (%)	校 名	確保率 (%)
서울大學校	58.2	全南大學校	12.6
江原大學校	29.0	慶北大學校	13.0
忠北大學校	9.0	慶尚大學校	—
忠南大學校	10.9	釜山大學校	13.9
全北大學校	22.4	濟州大學校	30.7

氣像을 함양하게 한다는 점에서 점진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寄宿舍(表 3 참조)도 大學設置基準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學生福祉施設이지만 현재 여러 大學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大學이 대부분의 학생들의 통학 거리에 비추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大學의 寄宿舍는 이를 학생들이 安定感을 가지고 면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福祉施設이라 할 수 있다. 傳統 있는 대학 寄宿舍들이 가정을 떠난 학생들에게 단순히 宿食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在學生先·後輩를 같은 방에서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친정한 우정과 自己形成의 도장이 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때때로 대단위로 확산시켜 여러 教授와 著名人士도 초청하여 人間生活의 지혜를 터득할 수 있는 강연이나 간담회 등도 학생들 스스로 갖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대학의 寄宿舍는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運營의 妙를 찾아내는 일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學生福祉施設로서의 體育施設은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아닌 講義棟 주변에 설치된 운동시설을 뜻한다. 이 시설은 空講 및 餘暇時間에 心身의 피로를 풀고 면학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 밖에도 學生福祉施設로서 大型 스쿨버스와 같은 通學便宜施設을 생각할 수 있다. 서울소재 大學 地方캠퍼스의 학생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지를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학생 通學버스의 運營은 이들 대학의 학생 寄宿舍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學生福祉施設이 될 것이며, 각 대학의 地方캠퍼스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施設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학생 通學버스는 학생들

의 實習과 見學을 위해서도 확충됨이 바람직하다.

### III

大學教育의 目的은 심오한 學問을 익히고 아울러 고매한 人格을 갖춘 未來의 社會指導者를 길러내는 데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고매한 人格의 陶冶나 人間性의 함양 등은 教科課程 중심의 教育만으로는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目的是 대학인의 人間의 交互作用이 원활하게 되고 학생들 스스로의 問題를 솔직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福祉施設이 확충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福祉施設도 授業施設이나 研究施設과 같은 차원에서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擴充方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의 福祉施設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大學財政이 견실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福祉施設의 投資財源으로 보다 더 活用하도록 하는 誘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國庫支援을 받는 國立大에 비하여 學生負擔金(등록금)에 살림살이를 위한 收入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私立大의 경우는 현재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고 학생 부담금을 인상시켜 이를 대학의 財政事情을 好轉시키는 데에도 현재 대학생 子女를 둔 平均的 家計의 所得水準으로 보아 한계가 있다. 따라서 大學財政의 堅實化를 도모하는 것은 私學財團이 補助金을 확대하고 社會各界로부터 기부금을 보다 많이 모금하는 것이다. 政府補助金도 先進各國에서는 私學財政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현재의 우리 實情으로서는 거의 기대를 걸 수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私學財團의 사학에 대한 補助金은 현재 私立大가 보유한 막대한 不動產이나 수익성이 낮은 事業들을 보다 收益性이 높은 것으로 轉用도록 하는 制度의 장치를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는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예로서 私學의 不動產 處分에 따른 양도 소득세의 減免措置와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社會各界로부터의

기부금도 이를 대학에 제공하려 하는 法人이나 개인에게 捐贈處理할 수 있게 하거나 免稅惠擇을 제공해 준다면 擴大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大學卒業者를 一定人員 이상 고용하고 있는 企業에 대하여 人員數에 비례하여 私學에 대한 기부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본다. 이 점은 대학이 創出한 外部經濟(external economy)를 보다 많이享有하는 企業일수록 大學發展에 보다 큰 責任을 져야 한다는 當爲性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私立大의 살림살이를 안전하게 꾸려 나가려는 財團의 노력도 중요하다. 필요없는 人員과 職責을 그대로 放置하여豫算의 대부분을 人件費에 지출하는 대학이 결코 적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福祉施設은 設立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運營과 管理 또한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福祉施設 자체가 수익을 얻기 위한 事業이 아니고 便益을 大學人에게 제공하는 機能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적인 運營體系를 갖추고 시설마다 運營規定을 두어 管理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용의 公平性·合理性·Safety를 도모해야 할 것이며, 원칙적으로 利用者負擔을 강조하고 利益이 생겼을 때에는 利用度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公休日이나 放學期間에 일시적으로 大學外의 社會團體에 貸貸될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利益을 낼 수 있도록 融通性을 두어야 할 것이다.

賦存資源이 빈약한 우리의 실정에서 지속적인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傳統文化를 繼承·創造하여 나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大學의 機能과 役割은 외국의 다른 어떤 대학보다도 더욱 크게 기대되어 온 터이다. 따라서 그 기대만큼 社會의各界各層에서는 대학 機能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支援과 관심이 줄기차게 이어질 때 우리 大學의 福祉施設도 先進諸國에 끗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대학도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人格陶冶의 殿堂으로 발전될 것이다.

\*